
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2.

국토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0월 15일, 천준호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(2025. 11. 26.)

상정, 축조심사

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(2025. 12. 15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 12. 17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천준호의원)

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,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·도립공원·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

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, 재해 방지,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·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,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또한,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산림·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,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,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,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서가 없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

※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.